

2020년 3월 4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촌산업과 과 장 김보람(044-201-1581), 사무관 정혜영(1590) / 제공일: 3월 4일(총 3매)

적정임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**농어촌민박 안전시설 설치기준은 소규모 숙박시설에
준하여 강화되었으며, 현행법상 농어촌민박은 소화기와
화재감지기만 마련하면 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**

[문화일보 3월 4일 보도에 대한 해명]

- 농어촌민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 설치기준은 소규모 숙박시설에 준하여 강화되었고 올해부터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외 가스누설경보기, 일산화탄소경보기, 자동확산소화기, 휴대용비상조명등, 피난유도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함
 - *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3 개정('19.8.16.공포, '19.10.23.시행)
- 3월 4일 문화일보 031면 <“모텔·펜션 화재 사상자 속출, 숙박업소 안전 불안감 확산”> 제하의 기사 일부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

주요 언론 보도내용

-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 내용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함
- 현행법상 숙박업소는 소화기, 화재감지기, 유도등, 완강기, 가스누설경보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, 농어촌민박은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만 마련하면 된다.



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- 농어촌민박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만 마련하면 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-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('19.8.16공포, '19.12.31.시행) 하여,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 기준을 소규모 숙박시설에 준하여 강화하였습니다.
- 이에 따라,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올해부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에 가스누설경보기, 일산화탄소경보기, 휴대용 비상조명등, 자동확산소화기, 피난유도표지 또는 조명등, 완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
- 또한, 농어촌정비법 개정('20.2월)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장 또는 누리집에 신고된 농어촌민박임을 표시하도록 할 예정('20.8월)이며,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.

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[별표 3] <개정 2019. 8. 16.>

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(제47조 관련)

구 분	시설의 종류	시 설 기 준
농 어 촌 민 박 사 업	기본시설	가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소화기, 단독경보형 감지기,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나.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「화재예방, 소방 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유도표지를,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각각 설치할 것 다.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완강기를 설치할 것
	조식 제공시설 (조식을 제공 하는 경우에만 해당)	가. 음식의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나.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·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다.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. 다만, 창문이 있거나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. 수도물(「수도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) 이나 「먹는물관리법」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※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 외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
	난방기[가스, 기름, 화목(나무),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가 있는 경우]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	가.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·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, 가스누설경보기(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,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나.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. 다만,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.

※ 비고: "기본시설"이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.